

approach)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문화의 민주화가 가지는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문화민주주의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을 순수예술에만 국한시키는 데 반대하며,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creative mind)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participation)를 고무하는 데 초점을 둔다(Langsted, 1990. p.17). 즉 문화의 민주화는 '일반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ordinary people)와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지향하며, 상향적(bottom up)이고 자발적인 방식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Mulcathy, 2006; 서순복, 2006).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의 민주화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임학순, 2003),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본격적 추진과 함께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 공공책임성과 예술활동의 자유: 팔길이 원칙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필연적으로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공적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예술부문에 개입하는 경우 정치권 또는 관료조직의 이해관계가 예술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위조머스키(Wyszomirski, 1982)는 이러한 문제를 예술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arts)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정치적 역학관계나 관료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문화예술의 자율적·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책임성과 예술의 자유(freedom of art)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지원의 원칙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팔길이 원칙은 1946년 영국문화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원의 원칙으로, 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